소송 등의 판결·결정(1심 판결)

1. 사건의 명칭	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
2. 원고・신청인	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
3. 판결・결정내용	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판결・결정사유	원고의 이 사건 각 옵션계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및 해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 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5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17년 1월 17일
7. 확인일자	2017년 1월 20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본 건은 원고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.